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 <개정 2022. 1. 21.>

굴착공사 협의서

(　　)공사 시행에 있어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9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.

공 사 명		접 수 번 호	
굴착공사 개시 예정일시	년 월 일 시경	공사 준공 예정일	년 월 일

1. 타공사에 의해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되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가스공급시설의 범위

번 호	가스공급시설	압 력	재 질	호칭지름	연 장	비 고
					m	
					m	

2.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

3. 공사 시공 시 준수사항에 대한 협의내용

4.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조치방법

번호	이 설	가배관	복 구	일시정지	관종변경	기타방호방법	방호시공자

5. 그 밖의 필요사항

6. 첨부 서류: 배관의 관경, 압력, 재질, 깊이, 매설위치 등이 기록된 상세도면 (1/500~1/1,000축척) 1부

년 월 일

굴착공사자: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가스공급자: 성명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